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54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당초 사업시행자의 기금 분할납부를 가정해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일시 납부가 발생하여 기금 수입이 변동됨
-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금 납부 사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계획 변경사항]

- 가.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천만원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107억 2천만원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 나. 상반기 기금 납부로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세외수입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경상적세외수입	-	740,183	740,183	100%
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임시적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기타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지출계획 변경사항]

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암사역사공원 조성’ 229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에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9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공공시설등 설치	-	32,320,000	32,320,00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22,950,000	22,950,000	100%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000	22,95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22,950,000	22,950,000	100%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9,370,000	9,370,000	100%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000	9,37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9,370,000	9,370,000	100%
재무활동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보전지출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여유자금 예치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예치금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3. 검토의견²⁾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의2³⁾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수입계획이 ①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2,160억원)중 1차분 216억원과 ②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107억 2,000만원)중 1차분 21억 4,000만원⁴⁾을 합한 237억 4,0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처로 규정한 '광운대역 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의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에 대해 공공기여금 납부자(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가 빠른 집행을 위해 107억 2,000만원을 '25년 1월, 일시 납부하여 당초 수입항목(그외수입)보다 85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예상하지 않은 수입증가에 따라 예금이자 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도 7억 4,000만원 순증되어 당초 수입계획(237억 4,000만원)보다 93억 2,000만원 증가한 330억 6,0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바,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237억 4,000만원)보다 △229억 9,900만원 감액한 7억 4,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당초에는 지출계획하지 않은 정책사업인 **공공시설등 설치**에 323억 2,000만원 순증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⁵⁾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237억 4,000만원)보다 △96.9%, △229억 9,900만원 감액한 7억 4,0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며
 - 신설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인 **공공시설등 설치**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된 바 없어 323억 2,000만원, 100% 순증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바,

4) 5회 분할납부를 가정한 금액이며, 향후 서울시·사업시행자 협약체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원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4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당초 사업시행자의 기금 분할납부를 가정해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일시 납부가 발생하여 기금 수입이 변동됨
-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금 납부 사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계획 변경사항]

가.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천만원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107억 2천만원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나. 상반기 기금 납부로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세외수입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경상적세외수입	-	740,183	740,183	100%
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임시적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기타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지출계획 변경사항]

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단위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암사역사공원 조성’ 229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에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9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공공시설등 설치	-	32,320,000	32,320,00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22,950,000	22,950,000	100%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000	22,95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22,950,000	22,950,000	100%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9,370,000	9,370,000	100%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000	9,37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9,370,000	9,370,000	100%
재무활동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보전지출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여유자금 예치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예치금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2133-6956)